

한국에너지공단 전문직(변호사) 채용 재공고

-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 -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으로 국민 행복에 기여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증진에 이바지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4년 4월 18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 ◇ 응시원서 상 사진등록란,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습니다.
- ◇ e-mail 주소 기재시 **학교명** 또는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 ◇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시, **개인인적사항(출신 학교,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 ※ 한국에너지공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채용방식 : 제한경쟁

2. 채용형태 : 정규직(일반직)

3. 채용분야 및 인원 : 세부 직무 내용은 [별첨1] 직무기술서 참고

구분	채용분야	직급	인원	주요 직무 내용	근무부서
전문직	변호사	4급	1명	• 법률 검토 및 자문 변호사 관리 • 소송업무 총괄 및 관련 업무 지원 • 규정·법령 관리 및 관련 업무 지원 등	준법지원실 (본사)

※ 적격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채용분야의 채용 절차를 중지하고 재공고(7일) 실시

4. 제한경쟁 응시자격

응시자격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변호사 자격 보유자

5. 일반 응시자격

응시자격

-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연령이 임용예정일(24.6.12.) 기준,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 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24.6.11.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채용확정 후 '24.6.12.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6. 근로조건

구 분	세부내용
수습기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을 시 면수습* * 단,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근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규정에 따라 근무지(울산)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숙소(공용) 지원 가능 - 근무지역은 공단 인사 운영상 필요시 본사 외 타 지역(지역본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근무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5일(주 40시간) (근무시간 09:00~18:00)

구 분	세부내용
보수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 54,852천원 수준(4급 1호봉 기준)(세전, 성과급 미포함) - 보수수준은 기본급 및 중식보조비, 직무역할비, 연구수당(변호사 자격)을 포함한 금액(경력가산* 및 제수당** 별도) * 수습기간 종료 후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공단 보수규정에 따라 환산경력을 합산한 호봉을 기본급으로 함(최대 20호봉까지 합산) ** 수습기간 종료 후 가족수당, 기술자격수당 등 공단 제수당지급내규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별도 지급 ※ 수습기간(임용일로부터 2개월)의 보수는 임용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및 중식보조비, 직무역할비만 지급하며, 제수당 지급내규에 따른 연구수당, 가족수당, 기술자격수당 등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7. 전형 절차 및 평가기준

□ 단계별 전형 개요

구 분		내 용	배 수
1단계	서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 적·부 판단 • 경력·경험기술서(정성평가) 	최종합격자의 5배수 이내
▽			
증빙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채용우대제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			
2단계	면접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수행능력면접(발표면접, 질의응답) • 직업기초능력면접(경험·상황면접, 질의응답) 	최종합격자의 1배수 이내

최종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사회형평적 인재 등 채용우대 제도(가점)를 적용

□ 단계별 전형 세부평가 및 운영 기준

- ①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적·부 판정과 경력·경험기술서 정성평가 실시

< 서류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 분	배점	내 용
응시자격	적부	▪ 지원자별 응시요건 적격 여부 확인
경력·경험기술서	100	▪ 평정기준에 따른 경력·경험기술서에 대한 정성평가
계	100	

- 서류전형 평가시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AI 평가를 통해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전형 기준과 별개로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AI 평가 이후 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평가 실시

<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기준 >

◆ (불합격 처리) 입사지원서 또는 경력·경험기술서 등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점검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AI 평가 이후 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심의 실시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불성실 기재자 판단기준 >

- **각 문항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한 경우**
* 2개 이상 문항의 작성내용이 50% 이상 동일 내용인 경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
- **동일한 단어 또는 문장을 반복하거나,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 **1개 이상 문항에 대해 글자수 300자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 위 항목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경력·경험기술서 평가 : 직무능력 중심 4개 항목으로 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양호	미흡	매우불
해당분야의 전문성(관련 업무수행실적)	30	30	24	18	12	6
직무수행방법 및 비전제시의 적정성	35	35	28	21	14	7
직무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25	25	20	15	10	5
직무에 대한 이해도	10	10	8	6	4	2
계	100	-	-	-	-	-

- ② (증빙서류 확인) 서류전형, 채용우대제도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입사지원 시스템으로 제출받아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

- 제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 및 적격 서류 제출자에 한해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 제출자는 면접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 미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제출자가 발생할 경우 서류전형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적격 시 면접전형 대상자로 추가 선정

③ (면접전형) 직무중심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 기초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내용) 입사지원시 제출한 경력·경험기술서 내용에 대해 응시자의 지원분야 관련 전문성, 실적 및 성과, 수행방법 및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도록 구두 발표(5분 이내)

* 발표내용(예시) : 지원분야 관련 전문성, 관련 경력, 실적 및 성과 등 개인 직무 역량 소개, 향후 직무 수행방법 및 계획, 경력 발전 방안 소개 등

- 면접전형 평가결과, 가점을 제외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채용 대상자로 판단*

* 60점 미만 시 채용 부적격으로 채용 대상에서 제외

< 면접전형 세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면접방법	배점	내 용
직무수행능력 면접	발표면접, 질의응답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 직무와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자의 직무전문성 등 평가 - 직무전문성(30), 직무이해도(20), 직무수행태도(10)
직업기초능력 면접	경험 및 상황면접, 질의응답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 직무와 관련된 지원자의 경험에 대해 면접관의 질의에 따라 지원자의 자세 및 역량을 심층 평가 - 의사소통능력(15), 대인관계능력(15), 직업윤리(10)
합 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요소별 5단 척도 평가 실시

④ (합격자 발표) 입사지원 시스템을 통해 응시자가 기재한 연락처 (휴대폰 및 E-mail)로 단계별 합격자 발표

8. 채용우대제도

구 분	우대내용	전형별 가점 적용여부	
		서류전형	면접전형
취업지원대상자	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
장애인	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	○
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	X
본사 이전지역 인재	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X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모든 우대 혜택은 '응시자격' 요건 구비 조건을 전제로 하고,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1. (취업지원대상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증명서 상 기재된 비율을 적용함.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 평가의 원점수의 4할 미만을 득점한 경우 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적용 사항은 채용 재공고 [별첨2] 참고)

-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④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채용 예정인원이 3명 이하 이고 응시자 수가 채용 예정인원보다 클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제외한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가점 1개를 부여(단, 응시자 수가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포함한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가점 1개만 부여)

-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 3. (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용일(24.6.12)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 4. (본사 이전지역 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학교 졸업자 (적용사항은 채용 재공고 [별첨3] 참고)
- 5.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그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6.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1년 이상 단절된 경력단절여성
 -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 7.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 8.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9.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임용예정일(24.6.12)을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자(보호조치 종료일(시설 퇴소일)이 '19.6.12. 이후인 자)

9.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채용 시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채용우대제도 적용을 위한 확인 등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처리 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온라인 접수양식) : [별첨4] 서식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검증 시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관련)

※ 제출서류는 인터넷 발급분(정부24 등) 제출을 원칙으로 함

- (필수)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전원 제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남성이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남성의 경우 병역 복무형태 및 군복무 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 (필수) 변호사 등록 증명원 사본 1부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하며, 변호사 등록 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 시험 합격증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동의서 1부([별첨5] 서식)

제출서류(채용우대제도 적용 관련,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제출서류는 인터넷 발급분(정부24 등)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앞뒤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하며, 국가유공자(상이본인)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앞뒤 사본 가능
- 본사 이전지역 인재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재학(휴학)증명서는 불가하며 졸업예정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저소득층(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수급자에 한함,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기본증명서(응시자 기준, 상세)(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의사 소견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출산·가족구성원의 질병에 따른 돌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보호종료확인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10. 접수방법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 2024. 4. 18(목) ~ 2024. 4. 25(목) 14:00

□ 입사지원서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채용사이트(<https://kea.recruitlab.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 접수마감 당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 시한까지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

11. 전형일정

구분	기간	비고
입사지원서 접수	4. 18(목) ~ 4. 25(목)	4. 25(목) 14:00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5. 10(금)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5. 10(금) ~ 5. 13(월)	5. 13(월) 14:00 마감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5. 20(월)	
면접전형	5. 27(월)	면접장소 : 공단 본사(울산)
최종 합격자 발표	6. 5(수)	
임용	6. 12(수)	임용 이후 수습근무(2개월)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12. 동점자 처리방식

구분	전형단계	동점자 처리방식
1차	서류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¹⁾ → (2순위) 서류전형 배점이 높은 항목 순 *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2차	면접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²⁾ → (2순위) 면접전형 배점이 높은 항목³⁾ → (3순위) 서류전형 동점자 결정방식 순 *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 1)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저소득층→경력단절여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자립준비청년→본사 이전지역 인재 순(단,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개만 적용)
- 2)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본사 이전지역 인재(단,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개만 적용)
- 3) 직무수행능력면접→직업기초능력면접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13. 채용 이의신청 절차

□ 이의제기 신청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

□ 이의제기 신청 방법

- 응시자 본인이 [별첨6] ‘2024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직원 채용 이의 신청서’ 를 작성하여 E-mail(recruit@energy.or.kr)로 제출

14. 예비합격자 운영 기준 및 채용비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

□ 채용 단계별 예비합격자 운영 기준

- (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예비합격 순위를 부여
- (면접전형)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인 응시자 전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할 이상인 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전형의 예비합격순위 상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채용비위 발생 시 채용 단계별 피해자 구제방안

- (서류전형) 채용비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 차기 동일 분야의 동일 직무 채용 건에서 피해가 발생한 단계 전형 면제(1회 한도)
- (면접전형) 채용비위 사실의 확인 후 부정으로 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한 후, 해당 피해자(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의 임용 의향 확인 후 임용 의사가 있을 경우 즉시 채용

15.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사지원 시 응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및 자격증 등의 증빙 자료는 반환 대상이 아님
- 금번 채용에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 과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절차

- 청구 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구 방법 : [별첨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를 작성하여 응시자 본인이 E-mail(recruit@energy.or.kr)로 제출(방문, 우편접수 등 불가)
- 반환 기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기재된 반환 우편주소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우편 발송

□ 채용서류 반환 관련 유의사항

-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은 공단이 부담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응시자 본인의 ①성명, ②수험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연락처(입사지원시 기재한 연락처), ⑥반환장소(주소와 다른 경우), ⑦반환 청구서류의 명칭, ⑧자필 서명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반환 청구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접수하지 않음

16.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및 제반 서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기타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는 즉시 불합격 처리하고,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응시를 제한함
 -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 최종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전력조회,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 및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등 채용 관련 제반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책임임
 - 모든 지원자는 인사검증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정보를 채용 종료시(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내) 까지 관리함
 - 확인 결과 기재내용이 허위·위조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전형의 예비합격순위 상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역 등 개인인적사항이 기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일부턴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함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2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 중인 자에 대해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 결과가 미흡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공고로 채용된 직원은 재직 중 개인수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채용대상자(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 *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으로 함
- 우리 공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참고
- 관련 문의처

-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s://kea.recruitlab.co.kr/>) 내 채용문의 게시판
- 공단 채용 콜센터(070-4896-0801)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 변호사]

채용 분야	법무 윤리 팀장	분류 체계	대분류	05.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중분류	01.법률
			소분류	01.법무
			세분류	01.법무(미개발)
공 단 주 요 사 업	<p>[에너지효율향상사업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 및 표준 기술 관리 에너지효율, 이용 및 사용량을 포함한 에너지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및 제도 지원 <p>[기후변화대응 사업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타성성 확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에너지-온실가스 부문 양·다자 국제협력프로젝트 추진 및 정보교류 활성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p>[수요관리(산업/건물/수송/공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건물수송공공 부문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관련 시책 개발개선 국가 에너지 수요관리 기반 구축 및 에너지수요 정책 정보지원 강화 산업체 자발적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중소기업 에너지효율 향상 체계적 지원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를 위한 절약설계 기준 강화 및 인증제도 고도화 자동차 연비등급표시제도, 자동차-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제도 운영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사업 지원 및 공공부문 에너지효율화 추진 <p>[에너지 진단 및 제도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 이용실태 및 효율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요소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 에너지진단제도의 개선-관리, 사후관리, 진단이행 실태관리 	<p>[열사용기자재 검사·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사용기자재 국내외 검사, 검사관련 제도 운영·지원 <p>[신재생에너지 사업기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정책방향 설정, 신규 제도 도입 추진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및 RE100캠페인 참여 독려 <p>[신재생에너지표준화인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작, 시험 시공 등에 대한 표준화를 위한 국가표준(KS) 제정 및 국제 표준 도입·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부품 공용화로 호환성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유도 및 국제 경쟁력 확보 지원 <p>[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관리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효율·안전이 확보된 신재생 설비 보급 <p>[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RP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이용, 설비 생산자를 대상으로 설치비 및 용자 지원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관련 사업 수행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운영 관리 <p>[자금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심사·추천) 및 사후관리 <p>[에너지복지 및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외계층 에너지복지 증대를 위한 냉·난방 바우처 지급 및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실현 에너지절약 캠페인, 에너지 기업 수출지원 홍보 등을 통한 에너지 정책 실행기반 마련 <p>[글로벌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에너지정책 자료 조사·분석 에너지관련 국제기구 협업 및 국제협력사업 기획·발굴·추진 		
능력 단위	○ (법무) 01.법령·제규정 관리, 02.법률검토, 03.소송 및 분쟁 관리			

<p>직무 수행 내용</p>	<p>○ (법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및 제규정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인 법규 해석, 제·개정 지원 - 전략적 소송 대응 등을 통해 법적 리스크 사전 예방하고 경영진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 주요 경영현안 관련 법률 자문 - 회사 관련 주요법안 입법 대응 지원 및 중요 소송 참여 및 대응전략 자문 - 자문변호사 관리 - 중요 경영현안에 TF 참여 및 현장 법률 지원 및 비정형 계약서 검토 - 주요 계약협상 및 체결 입회 및 사내직원 대상 법무교육 등 - 주요 계약 및 약정서 체결 검토 - 공단 업무 관련 입법 지원 및 대관업무 - 사내규정의 법률적 기준에 따른 검토
<p>필요 지식</p>	<p>○ (법무) 국회·정부·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령·지침, 에너지 분야 법령, 민사소송·집행 절차, 형법 및 형사절차, 행정절차 및 행정쟁송 관련법, 근로관계법, 지식재산 관련법에 대한 이해</p>
<p>필요 기술</p>	<p>○ (법무) 법령 및 규정 제개정안 작성 능력, 법규 개정 일정 관리 능력, 판례·행정심판례 활용 능력, 법률의견서 작성 능력, 서면 답변서 작성 능력, 쟁점 요약 능력, 변론 기법</p>
<p>직무 수행 태도</p>	<p>○ (법무) 논리적인 태도, 치밀한 검토 자세, 객관성 및 공정성 유지 태도, 사안별 균형 감각 및 종합적 판단 태도,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 주인의식과 책임감 있는 자세, 이해관계자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려는 자세</p>
<p>필요 자격</p>	<p>○ 국내변호사 자격 소지자</p>
<p>직업 기초 능력</p>	<p>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p>
<p>참고 사이트</p>	<p>○ www.ncs.go.kr</p>

[별첨2]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제도 세부 기준

- 가.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는 개별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전형단계(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별로 적용한다.
- 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를 부여한다.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위 ‘나’에 따른 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이하 ‘가점 합격자’라 한다)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

세부 적용 기준	
1. 전형단계별 가점합격자는 전형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점하지 않은 점수로도 합격한 사람은 가점합격자에서 제외한다.	
2.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 ‘1’에 따른 가점합격인원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전형단계별 응시자 수가 전형단계별 합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②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하는 제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3. 최종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때에는 모든 전형단계에서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가점합격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 단, 응시자수가 최종 채용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점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다.	

최종 채용예정인원	응시자 수	가점합격자	가점합격인원 상한제
4명 이상	전형단계별 합격예정인원보다 큼	전형단계별 발생	적용
	전형단계별 합격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음	해당 전형단계에서 발생	미적용
3명 이하 (위 ‘다’의 3 적용)	최종 채용예정인원보다 큼	전형단계별 미발생	미적용
	최종 채용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음	전형단계별 발생	미적용

- 라. 전형단계별 합격자를 결정할 때 전형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별첨3] 이전지역인재 기준

□ 이전지역 학교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2)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 (3)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이전지역 학교 제외 대상

- (1)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
 -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2)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

□ 그 외의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1) 이전지역 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2)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지역 인재에서 제외
 -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지역 인재에서 제외

< 예 시 >

<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 대학 졸업: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해당

< 본교의 위치와 분교·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

-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
-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
- *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 본교 학생은 부산,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

<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이전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비해당

<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

입사지원서 작성 양식

(한국에너지공단 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

자격사항			
* 변호사 등록 증명원 또는 변호사 합격증명서만 작성			
구분	등록년월일	자격증명	발급기관
등록 증명원	2024.1.1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합격증명서	2024.1.1	변호사	법무부

경력사항					
* 작성한 경력에 대해 '경력·경험기술서'에 세부 수행업무 등 작성					
근무기관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급(위)	담당업무
	시작일	종료일			
한국에너지공단	2024.1.1.	2024.1.31.	경영지원실	과장	법률자문, 송무

자기소개서
<p>귀하가 가진 직무능력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발전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기술해 주십시오. (300자 이상 1,000자 이내)</p>
<p><i>블라인드 채용 관련,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노출 금지</i> * 성별, 연령,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p>
<p>소속집단의 공동과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 및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또한 협력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함께 기술해 주십시오. (300자 이상 1,000자 이내)</p>
<p><i>블라인드 채용 관련,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노출 금지</i> * 성별, 연령,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p>
<p>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전에 없던 혹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경험(당시 발생한 문제 상황과 귀하가 제시했던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300자 이상 1,000자 이내)</p>
<p><i>블라인드 채용 관련,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노출 금지</i> * 성별, 연령,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p>

경력·경험기술서 작성 양식

(한국에너지공단 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

해당분야의 전문성(관련 업무수행 실적)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300자 이상 1,000자 이내)

* '경력사항'으로 작성한 경력에 대한 세부 수행업무 등

블라인드 채용 관련,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노출 금지*
** 성별, 연령,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직무수행방법 및 비전 (300자 이상 1,000자 이내)

* 지원직무 수행방법 및 전략, 공단의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자의 비전 및 추진 목표 제시 등

블라인드 채용 관련,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노출 금지*
** 성별, 연령,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직무수행계획 (300자 이상 1,000자 이내)

* 비전 및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직무수행계획 등

블라인드 채용 관련,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노출 금지*
** 성별, 연령,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직무에 대한 이해 (300자 이상 1,000자 이내)

* 지원직무에 대한 이해,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경험과 노하우 등

블라인드 채용 관련,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노출 금지*
** 성별, 연령,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별첨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